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위생업소 및 단체를 지원 및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지도·감독과 준용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8. 18. ~ 2026. 8. 25. (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